

광주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551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이한진

피 고 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욱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망 E과 F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A은 80,000,000원, 피고 B, C, D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80,000,000원 중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채무자인 F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구상금 채권), F의 무자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망 G의 2021. 8. 20. 사망으로 인한 2021. 8.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인 F의 부 망 E(2022. 8. 4. 사망)과 전득자인 피고 A의 악의 여부이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채무자인 F이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상속분 대신 망 E으로부터 현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2021. 8.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F과 망 E, 피고들은 모두 가족관계 있고, 특히 피고 A은 F의 배우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는 악의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 피고 A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상회복

1)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금액이 80,000,000원인 사실, F과 피고 B, C, D는 망 E의 공동상속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 80,000,000원, 피고 B, C, D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80,000,000원 중 자신들의 상속분(1/4)에 따라 산정된 20,000,000원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F과 망 E의 2021. 8.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A은 80,000,000원, 수익자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80,000,000원 중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의 구상금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피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 2023. 1. 13. 피고 A으로부터 2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F을 대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별지